

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

※관리번호

--	--	--

--	--

사업자등록번호

--	--	--	--

--	--

--	--	--	--	--	--	--	--

※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.

법인명(상호)

법인소재지(주소)

대표자성명
(주민등록번호)

전화번호

환급신청내역

① 종목명 (액면가액)	② 종목코드	③ 취득일	④ 매도일	⑤ 보유기간	⑥ 이자율	⑦=①×⑤×⑥ 보유기간이자상당액	⑧ 세율	⑨ 법인세
()								
()								
()								
()								
()								
()								
()								
환급신청세액								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라 환매조건부
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 성 방 법

1. "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"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 3에 따른 "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"를 말합니다.
2. ①종목명란의 ()에는 액면가액을 적습니다.
3. ③취득일란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개시일 또는 직전이자 지급일을 적습니다.
4. ④매도일란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도일을 적습니다.
5. ⑤이자율란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적용이자율을 적습니다.
6.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법인(매수법인)은 채권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납부세액명세서(을)[별지 제10호서식(을)]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(별지 제68호의4서식)를 구비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